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19 - 4호

2019 은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2차 공고

은평마을지원센터에서는 씨앗기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된 주민 모임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와 이웃 주민간의 협업을 통해 관계망을 확장하고 활성화된 마을의 주인이 되는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2019 은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인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 은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2차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 11. 15.
- 신청자격 : 은평구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단, 가족(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은 1인으로 간주, 대표제안자는 은평구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주민모임 연합사업의 경우 은평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로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 3개 이상(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중 이거나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1개 이상 필수 참여)
-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해당
- * 은평구 거주동 주민자치위원 참여시 가산점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교육 컨설팅 지원
- 예산규모 : 총 20,000천원(시비)

2. 공모 분야 (별첨1~2 참고)

- 공통사항 : 자부담 10%이상 책정(사업자 참여의지 및 책임성 확보)

구 분	지원금액	신청자격
주민모임 연합사업 (네트워크형)	최대 300만원이내 (실무책임자 활동비 보조금총액의 최대3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단위 주민모임 상호 연결 및 관계형성지원 [주민모임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동네자원(인적, 물적) 조사, 주민모임간 교류를 통한 동네 네트워크 안정화 구축사업 지원] 은평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로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 3개 이상(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 이거나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1개 이상 필수 참여) 사전상담 필수 실무책임자(마을간사) 활동비 최대 1인 가능, 대표제안자 겸직 가능 <p>※ 주민자치위원 참여시 가산점 부여</p>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최대 400만원이내 (실무책임자 활동비 보조금총액의 최대3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애착심 고취를 위한 특색있고 활성화된 골목길 만들기 실행으로 활동범위는 반경 50M이내, 골목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한 골목의 재구성, 골목반상회, 골목 운영위원회 등 구성, 운영지원저층 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근거가 있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 단체 (단체모임은 단체 소개서 제출) 은평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사전상담 필수 실무책임자(마을간사) 활동비 최대 1인 가능, 대표제안자 겸직 가능 <p>※ 주민자치위원 참여시 가산점 부여</p>

□ 제외대상 사업 :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동일한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단체.법인)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1회성 행사 및 축제,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 벽화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사업

□ 추진절차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사전상담 지원

- 기 간 : 2019. 6. 21.(금) ~ 7. 5.(금)
- 내 용 : 접수기간 중 현장 상담 가능(접수마감 당일은 지양)
 - 은평마을지원센터 통합공모사업 안내 및 제안서 작성 상담
 - 사업참여자 욕구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담메뉴의 “상담신청하기” 클릭 ⇒ 상담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만
 3일 이내 상담진행

- 문의 전화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6958-8501~3

4. 공고 및 접수

공고일 : 2019. 6. 20.(목)

-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카페 <http://cafe.daum.net/eptown>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접수기간 : 2019. 6. 20.(목) ~ 7. 8.(월) 18:00까지

접수방법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은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선택 ⇒ 신청하기

5. 사업심사 및 선정

주민참여 심사 일정 : 2019. 7. 11.(목)

구 분	내용
1. 주민참여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적정성 여부 검토, 제안서 내용보완 요청· 제안취지 및 목적, 주민참여의지, 모임현황 등 현장 확인
2. 최종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 수와 사업별 지원 금액 결정

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채점 및 사업 제안자들과 개별 현장 대면을 통한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사업타당성	1. 사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인지 여부
	2. 사업의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모임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3. 사업현실성	■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4. 주민자발성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 인지 여부
	5. 예산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6. 지속가능성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지 여부
	7. 사업 이해도 및 수행역량	■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 제안한 사업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선정 결과발표: 2019. 7. 16.(화)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음카페 <http://cafe.daum.net/eptown> 또는 개별통보(심사내용은 비공개)

6. 선정자 워크숍

일 시 : 2019. 7. 18.(목)

장 소 :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즐거운 소통)

대 상 : 선정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및 마을간사(실무책임자) 2인 이상
필수 참석

내 용

선정자 필수 사항 안내

주민모임별 실행계획서 작성 및 발표를 통한 현장 컨설팅 진행

실행계획서 제출 기한 : 2019. 7. 22.(월) 18시까지

내 용

- 사업 선정자 당초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7.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협약 체결(협약식 진행)

○ 일 시 : 2019. 7. 24.(수)

○ 내 용

- 사업 선정자 당초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 선정자와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간 협약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제출서류 : 협약서 2부, 청렴이행서약서, 수정제안서,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사본

□ 사업비 교부

○ 일 시 : 협약체결 후 1주일 이내

○ 내 용

- 실행계획서 상의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보조금통장 일괄교부

-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서류 중간 점검 필수

8. 사업 집행 및 정산

□ 사업집행 및 정산보고

○ 사업실행 : 협약체결일 ~ 2019. 11. 15.

○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2019. 11. 30 까지)

- 제출내용 :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 기 간 : 2019. 8. ~ 11. 15.

○ 내 용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측진가와 주민모임 간 1:1 매칭

- 사업 추진기간 중 매월 중간점검 및 마무리 컨설팅 지원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증빙서류 구비,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 안내

- 주민 모임의 목표 및 성과를 측정,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으로의 견인 추진

□ 예산회계 교육

○ 기 간 : 2019. 8월 중

○ 내 용

- 사업추진 기간 중 모임별 1회 예산회계 교육 지원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예산집행 기준 및 지출 증빙서류 구비방법 안내

9.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자 워크숍 및 예산회계 교육, 중간 모니터링 필수 참여
- 열린 마을강좌(의사소통훈련, 인권감수성교육)는 필수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실행계획과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선정시 사업을 필히 수행해야 함.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집행
- 최종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시 반드시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책정
- 사업지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참여 필수
 - 동 마을네트워크 참여 필수
 - 마을사업지기 간담회 및 집담회 참여 필수
 - 사업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동상황 및 정보 공유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카페(<http://cafe.daum.net/eptown>)및 선정자 온라인 모임 의무가입
 - 은평 마을공동체 사례발표회 참석
 - 은평 마을공동체 사례집 발간을 위한 원고 의무 제출

10. 추진 일정

세 부 일 정	내 용
2019. 6. 20	사업 공고
2019. 6. 21 ~ 7. 5	사전 상담 (필수)
2019. 6. 21 ~ 7. 8	주민제안서 접수
2019. 7. 11	주민 참여 심사
2019. 7. 16	사업 선정 발표
2019. 7. 18	선정자 워크숍
2019. 7. 22	실행계획서 제출

2019. 7. 24	협약 체결 (협약식)
협약 후 일주일 이내	보조금 교부
협약체결일 ~ 2019. 11. 15	사업시행 및 컨설팅
2019. 8월 중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2019. 사업기간 중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 교육
2019. 11. 30.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서 제출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유의 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지원 철회나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 및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중복지원불가)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산출내역, 지원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심사 선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6958-8501~3)

[별첨 1]

『2019 주민모임 연합사업(동단위 네트워크형)』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 주민모임 연합사업(동단위 네트워크형)

- ### 사업목적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단체)이 자발적인 공론장을 통해 관계를 연결·확장하고 마을의제 발굴, 실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 11. 15

- 지원금액 : 최대 3,000천원 이내

2. 광모 내용

구 분	내 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단위 주민모임 상호 연결 및 관계형성지원[주민모임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동네자원(인적, 물적)조사, 마을 돌아보기 여행, 주민모임간 교류를 통한 동네트워크 안정화 구축사업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 사업	<p>열린마을강좌 최소 1강 필수 편성 (예시: 마을공동체 이해, 민주 시민교육, 의사소통, 마을기금의 이해 등으로 골목 활성화에 필요한 주제로 1강 구성)</p>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3,000천원 이내 • 실무책임자(마을간사) 활동비 보조금 총액의 최대 30%이내 • 식비 및 다과비 보조금 총액의 최대 20%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편성 필수, 자부담의 30% 이내 재능기부 강의 편성 인정 자부담의 20% 이내 당해연도 수익금 편성 인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로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 3개 이상(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 이거나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1개 이상 필수 참여) • 실무책임자(마을간사) 활동비 최대 1인 가능, 대표제안자 겸직 가능 • 사전상담 필수 <p>※ 주민자치위원 참여시 가산점 부여</p>

3. 2019년도 주요 개선사항

○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보완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함
- 결과보고 시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 시 미선정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 범위 개선

- 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 변경시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천징수 및 소득세 관련 규정 명시

- 활동비나 활동비성 경비의 경우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4. 유의 사항

- 제안 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심사 선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별첨 2]

2019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명 : 2019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사업목적

저층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골목 단위 거주민이 이웃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골목 경관조성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 11. 15

지원금액 : 최대 4,000천원 이내

2. 공모 내용

구 분	내 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애착심 고취를 위한 특색 있고 활성화된 골목 만들기 실행<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 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한 골목의 재구성- 활동 범위 : 반경 50미터 이내• 골목반상회, 골목운영위원회 등 구성,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공유 주민모임 발굴 및 확대 포함- 골목단위 거주민 간 합의를 통한 공동 소유재 조성, 활용 <p>※ 제외사항 : 벽화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계획은 지양</p>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 사업	열린마을강좌 최소 1강 필수 편성 (예시: 마을공동체 이해, 민주 시민교육, 의사소통, 마을기금의 이해 등으로 골목 활성화에 필요한 주제로 1강 구성)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4,000천원 이내• 마을간사(실무책임자) 활동비 보조금 총액의 최대 30%이내• 식비 및 다과비 보조금 총액의 최대 20% 이내•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편성 필수, 자부담의 30% 이내 재능기부 강의 편성 인정 <p>※ 자부담으로 마련된 회비 또는 수익금 당해연도 사용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단체, 주민모임, 커뮤니티 공간 등 2개 단위 이상 컨소시엄으로 제안 가능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 임의단체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5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민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실무책임자(마을간사) 활동비 최대 1인 가능, 대표제안자 겸직 가능 • 사전상담 필수 <p>※ 주민자치위원 참여시 가산점 부여</p>
------	---

3. 2019년도 주요 개선사항

○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보완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을 편성해야 함
- 결과보고시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미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따라 보조금에서 반환하여야 함
- 본 사업 자부담 마련방식 및 사용 내용

구분	타 공모사업	본 사업
증 빙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부담 통장 사본 제출	사업제안서 내 자부담 마련 활동 계획서 제출
주 체	사업제안자	사업제안자
방 식	사업제안자 우선 마련	사업 과정 중 마련 및 활용 예) 주민 대상 모금 활동, 후원행사 등 목적형 수익활동을 통한 마련
지 출	회비는 당해연도 사용 수익금은 차년도 사용	회비.수익금 당해연도 사용
사용용도	사업 전 과정	골목경관조성의 일부

※ 자부담 마련 방식 변화 이유 : 명확한 사용용도를 가진 수익금의 지출을 통한
골목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의 작은 경험 마련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 범위 개선

- 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 변경 시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천징수 및 소득세 관련 규정 명시

- 활동비나 활동비성 경비의 경우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제안 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심사 선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예시]

○ 지원신청 사업 예시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 골목의 특성이 드러나는 사업명 (예시)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골목만들기
 - 자영업자가 살맛나는 골목만들기
 -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골목만들기
- 제안내용 (예시)
 - 해당 골목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의제로의 골목스토리 만들기
 - 골목의 특성이 분명한 곳으로써 어르신 혹은 아동, 1인 가구 밀집 등 계층 밀집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골목 만들기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골목만들기’에서 진행하는 동네밥상
 - 골목주민모임 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
 - 주민 관계망 확장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골목 사례탐방 등
 - 골목 문제 해결 및 골목 공유를 위한 제반 활동
 - 주민모금활동, 후원행사 및 벼룩시장 등 행사 수익 발생을 ‘00골목기금’으로 적립
 - 골목 공동소유 공간과 자원 조성(공동밥상, 공동공구, 공동택배소, 1인가구 전파상 등)
- 골목단위 활성화 방법 유형 (예시)
 - 골목반상회 ◦ 골목운영위원회 모임형성 ◦ 골목자원조사 ◦ 밥상모임
 - 골목정보게시판 운영(행사, 모임 및 동아리운영, 일자리 공지 등)
 - 골목놀이 ◦ 골목 공동소유 조직 형성
 - 골목편당 ◦ 골목신탁 설립 등 ◦ 기타

○ 골목 및 활동의 범위

→ 왜 골목인가?

- “대면관계가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단위”,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골목,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등 근린 생활권(골목 단위)인 거주지 단위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공동소유재 및 경관 조성 경험쌓기를 실현함으로써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의 마을공동체 가시화

→ 활동의 범위는? 대상 골목의 반경 50미터 이내

